

검 토 보 고 서

■ 조례명

-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제정사유

-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요령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2조(기능)규정
- 제3조(구성방법)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 위원은 군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은 당해 직위 재직 기간동안 제임
- 제6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10조(수당등) 회의 출석 위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기에게 예산의 범위 내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가능

■ 검토결과

- 대한민국 50주년 8. 15경축사를 통하여 대통령께서 선언한바 있는 「제2의 건국」의 추진목표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됨.
- 본 조례는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지방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지원 활동으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 정부의 제2의 건국운동 추진지침과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추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부과장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격부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